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7. 7. 7.

개정 2019. 1.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미리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 2. "전문기관"이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 · 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 3. "연구 원자료" 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 4. "연구자료" 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 5. "연구결과" 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이끌어 낸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 6.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 7.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하다.

- 8. "피조사자" 란 제보자의 제보나 본교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9. "예비조사" 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10. "본조사" 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11.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본교 교직원과 연구 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모든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대학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제5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지키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알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전문기관 및 다른 대학 등에서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총장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8.)
-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10.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개정 2019. 1. 18.)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7조(설치) 본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 · 분쟁의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에 관한 사항
- 4. 예비조사위원회의 구성, 예비조사의 착수, 예비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본조사의 착수, 본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7.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된 기록의 보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 18.)
 - ② 산학협력단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8.)
 -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부단장이 된다. (개정 2019. 1. 18.)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산학협력단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이바지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주지 않거나, 공헌 또는 이바지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주는 행위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이바지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주는 경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이바지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받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이나 지침' 또는 보편적인 기준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
 - ② 제11조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 및 전문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 제13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산학협력단에 구술·서면·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제보내용이 거짓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총장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③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엄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및 본교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공개할 수 있다.
-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가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③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제11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여부
 - ④ 예비조사에서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4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예비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결과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⑦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2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들이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한다.
 -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여야 함
 -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23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②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2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 결과
 -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 밖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 제26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 내용,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및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 모두의 의견 일치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위원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판정결과를 연구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끝나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7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8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② 총장은 연구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연구지원기관의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29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총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사안의 본교 소속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제보나 진술을 한 본교 소속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기록보존 및 정보공개) ① 총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1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394호, 2017. 7. 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및 폐지)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으로 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연구윤리위원회"로 한다.
 - ②「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 제3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로 본다.

부칙(제461호, 2019. 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